##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5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배현진·김성원·박정훈

우재준 · 김태호 · 김기웅

김대식 • 조지연 • 고동진

김형동 • 정점식 • 박정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이용자의 성인여부 확인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의 영업소를 말한다)의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2조의4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2조의4(이용자의 성인여부 확
	인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u>자는 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u>
	법」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의
	영업소를 말한다)의 이용을 매
	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
	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u> 3의2. 제42조의4를 위반하여 이</u>
	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자
4. ~ 25. (생략)	4. ~ 2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